

日韓国際私法学会学術交流協定

日本国の国際私法学会と韓国国際私法学会は国際私法学の発展のため下記の通り学術交流協定を締結する。

第1条 学会誌の寄贈

各学会は、それぞれが発行する学会誌を他方の学会の指定する一の図書館等に寄贈する。

第2条 共同学術大会の開催

- (1) 各学会は、適切なテーマについて適切な時期に、日韓共同研究大会（通常の研究大会の一部をこれに当てるこどもできる。）を企画し、開催する。
- (2) 各学会は、他方の学会からの求めに応じて、他方の学会が開催する日韓共同研究大会にふさわしい報告者を推薦する。
- (3) 日韓共同研究大会への参加（報告者としての参加を含む。）について、いずれの学会も第3条に定める点を除き、経済的負担を負わない。ただし、日韓共同研究大会を主催側の学会は、他方の学会からの参加者の費用の全部又は一部を賄うため、外部資金等の調達に努めるものとする。
- (4) 各学会は、日韓共同研究大会における報告をもとにした論文を、できる限りそれぞれの学会誌に掲載する。

第3条 研究大会への参加

各学会は、それが開催する研究大会に他方の学会の会員が参加する場合には、傍聴料を無料とする。

第4条 その他の学術交流

各学会は、この協定の趣旨に合致するあらゆる学術交流を積極的に推進する。

2015年9月22日

日本国国際私法学会

道垣内 正人
理事長

韓国国際私法学会

鄭炳碩
会長

한일 국제사법학회 학술교류협정

한국국제사법학회와 일본의 국제사법학회는 국제사법연구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학회지 기증

각 학회는 자신이 발행하는 학회지를 상대방 학회가 지정하는 한글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다.

제2조 공동학술대회 개최

- ① 각 학회는 적절한 주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한일공동학술대회(일반 학술대회의 일부를 이에 맞출 수도 있다)를 기획·개최한다.
- ② 각 학회는 상대방 학회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 학회가 개최하는 한일공동학술대회에 적합한 발표자를 추천한다.
- ③ 한일공동학술대회 참가자(발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어느 학회도 제3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일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학회는 상대방 학회 참가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외부 자금 등의 조달에 노력한다.
- ④ 각 학회는 한일공동연구대회에서의 발표를 기초로 한 논문을 가능한 한 자신의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3조 학술대회참가

각 학회는 자신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상대방 학회의 회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무료로 한다.

제4조 그 밖의 학술 교류

각 학회는 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여타의 학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15년 9월 22일

한국국제사법학회

정병석
회장

일본 국제사법학회

마사토
도가우치 이사장